
'15년 SW융합 R&D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서

2015. 11.

목 차

I. 사업 개요	1
II. 세부 사업별 공모 추진내용	2
III. 과제 신청 및 접수	5
IV. 추진 체계	6
V. 추진 절차 및 일정	7
VI. 평가 절차 및 기준	8
VII. 기타 유의사항	10
[별표1]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..	14

□ 사업목적

- 인천의 특화전략사업인 바이오(BT)산업과 IT(ICT)산업에 SW융합을 통한 신기술·신산업 창출
-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SW융합 기술개발을 통한 인천지역 SW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지역 SW산업 경쟁력 강화
- 해외 수출 가능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고취

□ 세부 사업내용

- SW융합분야의 신기술·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(4억원 내외)

구분	IoT 분야	3D프린팅 분야	드론 분야	SW융합 상용화 (자유공모)
지원 규모	총 4억원 내외 (과제당 1.5억원 내외, 3개 내외의 과제 지원)			
지원 내용	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한 IoT(사물인터넷) 기술 기반의 SW융합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	3D프린팅 분야에 시장 선점이 가능한 3D프린터 및 응용 SW 개발 지원	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드론 및 응용플랫폼 개발 지원	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BT·IT제품 + SW지식서비스 포함 융합을 통해 B2C분야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SW융합 제품 개발 지원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준비도(TRL) 6단계 까지의 기술개발 지원 ○ 타 지원 과제를 통해 개발된(기술준비도(TRL) 4단계 수준) 결과물에 대한 후속 기술개발(기술준비도(TRL) 7단계 까지) 지원 ○ 총 과제비의 75%까지 기술개발 자금 지원 ○ 협약일정에 따라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○ 기업당 1개 과제만 제안 가능(주관, 참여 모두 해당) ○ 정액기술료 징수 과제 			

1 IoT(사물인터넷) 응용 서비스 SW융합 기술개발 지원

□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한 IoT(사물인터넷) 기술 기반의 SW융합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

구분	주요 내용
예산	○ 과제당 1.5억원 내외
지원 분야	○ (IoT 서비스) IoT 확산·저변확대를 위해 상용 수준의 기술 및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개방형 대시민 서비스 개발(인천 지역 우선 적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) ○ (IoT 플랫폼) 향후 응용 서비스 연계, 타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산 등이 가능하도록 IoT 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IoT 플랫폼 개발
지원 대상	○ 주관기관 : 인천소재 SW중소기업 * 과제 선정 후, 3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본사이전 가능한 경우 타 지역 기업 제안 가능 ○ 참여기관 : 관련분야 기업, 학교, 연구기관 등 ○ 수요기관 : 과제 결과물 적용·구매 기관 또는 기업 * 수요기관 수에 따른 가점 부여

2 3D프린팅 서비스 SW융합 기술개발 지원

□ 3D프린팅 분야에 시장 선점이 가능한 3D프린터 및 응용 SW 개발 지원

구분	주요 내용
예산	○ 과제당 1.5억원 내외
지원 분야	○ (서비스) 3D 프린팅 산업에 직·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하거나, 관련 산업에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개발 * 3D콘텐츠 유통 서비스 플랫폼, 3D 저작물 관리 솔루션, 3D 프린팅 시뮬레이터 등 ○ (국산화) 외산 솔루션을 대체하여 3D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SW 및 SW융합제품 개발 * 예시 : 교육용·SOHO창업용 3D콘텐츠 저작도구, 3D콘텐츠 획득 솔루션(보급형 3D스캐너) 등
지원 대상	○ 주관기관 : 인천소재 SW중소기업 * 과제 선정 후, 3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본사이전 가능한 경우 타 지역 기업 제안 가능 ○ 참여기관 : 관련분야 기업, 학교, 연구기관 등 ○ 수요기관 : 과제 결과물 적용·구매 기관 또는 기업 * 수요기관 수에 따른 가점 부여

3

드론(Drone) 서비스 확산 기술개발 지원

□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드론 및 응용플랫폼 개발 지원

구분	주요 내용
예산	○ 과제당 1.5억원 내외
지원 분야	○ (지역특화 산업 융합 서비스 드론) 물류산업, 문화산업, 농업 등 타산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드론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, 인천지역에서 시범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드론 기술개발 지원 ○ (드론 응용 플랫폼) SW코딩 - GCS(Ground Control System) - 시뮬레이션 - 비행 테스트 등 사용자가 직접 드론을 손쉽게 프로그래밍·체험할 수 있는 초급개발자용 또는 놀이용 드론 플랫폼 개발
지원 대상	○ 주관기관 : 인천소재 SW중소기업 * 과제 선정 후, 3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본사이전 가능한 경우 타 지역 기업 제안 가능 ○ 참여기관 : 관련분야 기업, 학교, 연구기관 등 ○ 수요기관 : 과제 결과물 적용·구매 기관 또는 기업 * 수요기관 수에 따른 가점 부여

4

SW융합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(자유공모)

□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BT·IT + SW융합을 통해 B2C분야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SW융합 제품 개발 지원

구분	주요 내용
예산	○ 과제당 1.5억원 내외
지원 분야	○ (SW융합 기술개발) 바이오, IT산업 분야의 시장성 높은 제품에 SW(지식서비스 포함)기반의 기(既) 확보된 혁신적인 아이디어(특허)를 융합한 기술 개발 ○ (테스트베드 구축) SW융합 기술 기반의 시제품을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및 SW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용자 환경 중심의 이용행태분석 실시 ○ (검증 및 보완) 테스트베드를 통해 도출된 테스트 결과서 및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품 출시를 위한 기술검증 및 보완 실시
지원 대상	○ 주관기관 : 인천소재 SW중소기업 * 과제 선정 후, 3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본사이전 가능한 경우 타 지역 기업 제안 가능 ○ 참여기관 : 관련분야 기업, 학교, 연구기관 등 ○ 수요기관 : 과제 결과물 적용·구매 기관 또는 기업 * 수요기관 수에 따른 가점 부여

구분	주요 내용	
지원 조건	구분	주요내용
	지원 규모	과제 당 1.5억원 내외(12개월)
	지원 조건	총 사업비의 75% 이내(연차별 지원) * 세부사항은 [별표] 1. 출연금 등 지원 기준 참조
	민간 부담률	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으로 편성하되, 그 중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10% 이상 * 세부사항은 [별표]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참조
	인건비	산정가능
	기술료	징수
성과물 귀속 및 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 ○ 기술료 납부 이후, 일부 결과물에 한해 실시기관으로 소유권 양여 가능 	

1. 접수마감 : 2015. 12. 10(목) 17:00까지

- *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, 접수 당일 신청기업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
- * 사업계획서 3부(원본1부, 사본2부)는 인편으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
제출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99 애니오션빌딩 12층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김정환 선임

2. 접수방법(전산접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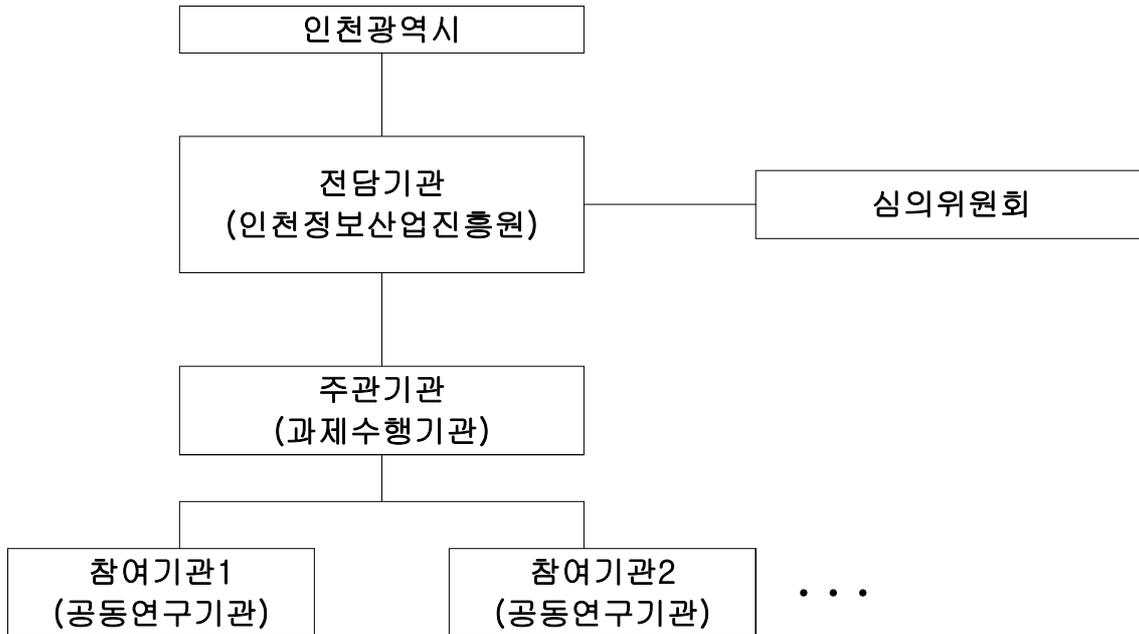
-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(www.biplex.or.kr) 홈페이지 기업 회원 가입 후 사업공고 → BI-Plex 사업공고 → SW융합 R&D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
- * ‘사업계획(신청)서 작성요령 및 서식’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며, 반드시 접수마감 전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 후, 사업계획서 3부(원본1부, 사본2부) 인편으로 별도 제출
-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

구 분	첨부서류 목록
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서 3부(원본1부, 사본2부) ○ 주관기관,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○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(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) 각 1부 ○ 수요기관의 참여의사 협약서 각 1부(해당 시 제출)
기업에 한하여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○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○ 주관기관, 참여기관의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○ 수행기관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○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○ 수행기관 2013, 2014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○ 수행기관(기관장)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○ 현금출자(납입) 협약서

* 발표자료는 평가 2일전까지 이메일로 별도 제출

3. 문의처

- 인천정보산업진흥원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
 - 김정환 선임 (kjh529@inis.or.kr ☎ 032-723-9804)
 - 노오란 선임 (yellow3259@inis.or.kr ☎ 032-723-980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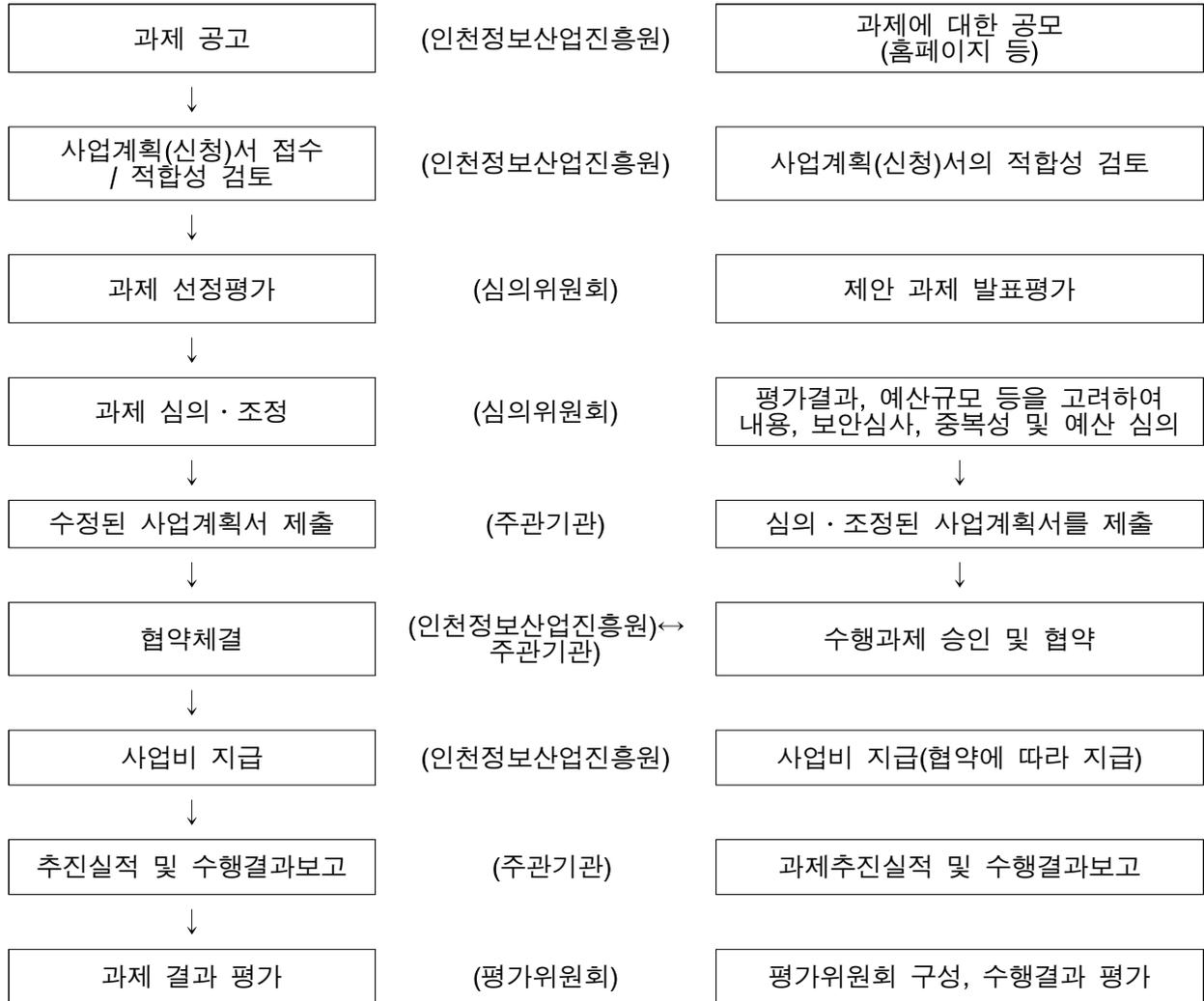


<추진기관별 역할>

구 분	주 요 업 무
인천광역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총괄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○ 사업내용·범위 확정 및 예산 확보·배분 ○ 과제간 연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의사 결정 등
심의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평가, 세부내용 검토,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○ 과제 추진범위, 예산 등 최종 심의조정 및 확정 (산·학·연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)
전담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선정 총괄 및 협약체결(주관기관과 공동) ○ 착수, 중간점검 및 평가, 예산집행 등 과제관리 일체
주관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약체결 (전담기관과 공동) ○ 해당과제의 시스템 개발, 구축 및 설치 등 추진 ○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추진 ○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

※ 상기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은 추진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

□ 추진절차



□ 추진일정

- '15. 12. 10 : 과제 신청접수 마감(17시 마감)
- '15. 12. 11 : 과제 적합성 검토
- '15. 12. 15 : 제안과제 발표평가
- '15. 12. 16 ~ 22 :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
* 추진일정은 전담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1. 평가 절차

구분	검토·평가 주체	검토·평가 내용	비고
① 적합성 검토	인천정보산업진흥원	○ 신청과제의 적합성 여부	
② 발표평가	심의위원회	○ 과제의 합목적성, 추진 효과, 과제 추진 여건 등	과제책임자 발표
③ 종합심의	심의위원회	○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과제 확정	

2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
과제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·학·연·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
- ① 적합성 검토 : 제출서류 검토,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,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
- ② 발표평가 : 신청 과제별 수행책임자의 발표(발표·질의응답 30분 내외)를 통하여 평가 실시
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 - *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가 선정 한 후, 과제별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
- ③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및 예산 등 심의·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

3. 평가 기준

평가 항목	세부 항목	평가 지표	배점
지원 필요성	기술개발 필요성/시급성	· 기술적·정책적·경제적 중요성 관점에서 해당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	10
추진계획 타당성	사전준비성/추진계획 구체성	· 기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조사/준비성 ·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/실행가능성 ·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기간(기술이전/사업화기간 포함)의 적정성 · 3천만원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타당성	10
	연구개발 목표 명확성	·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 ·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달성정도에 대한 측정의 명확성	10
기술성 및 연구개발수행능력	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/혁신성	· 개발목표가 해당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할 만큼의 도전성 · 연구개발목표가 세계 최고 기술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우위 여부 ·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 내용의 차별성/혁신성 · 연구개발기술·제품이 세계 최초 기술 또는 PCT 출원 가능성	10
	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	· 연구개발방법의 구체성/타당성 및 연구개발 단계별 연계성/적합성 · 미확보 또는 애로 기술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법의 창의성	10
	총괄책임자/연구팀 능력	·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실적 · 총괄책임자의 연구팀 운영능력, 수행기관/참여연구원의 기술력/전문성, 역할분담/구성의 적정성	10
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	사업화 가능성	· 연구개발결과물의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(완성도)	20
	시장진입 가능성	· 연구개발결과물의 사업화 소요 기간, 난이도를 고려한 시장 진입 가능성	10
	경제성	· 매출발생, 수입대체, 수출효과, 고용창출 효과 등	10
합계			100

* [가산점1] 매칭펀드 부담비율 평가점수 산정방법 : 기업 현금 자부담금 대비 추가 현금 자부담금 비율을 산출하여 점수 산정

기존 현금 자부담 대비 추가 매칭 비율	90% 이상	70%이상~90%미만	50%이상~70%미만	30%이상~50%미만	10%이상~30%미만	10% 미만
점 수	5	4	3	2	1	0

** [가산점2] 수요기관 참여 평가점수 산정방법 : 수요기관 참여확약서 제출 기관(기업) 수

수요기관 수	5개 이상	4개	3개	2개	1개	미제출
점 수	5	4	3	2	1	0

1. 적용 규정

- 본 사업관련 제반업무 절차는 ‘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(2014.01.06)’을 적용
 - * 본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「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(2014.01.06.)」, 「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규정」 등을 준용하여 과제평가 및 수행관리

2. 지원과제 선정

- 신청과제 평가 및 심의를 통하여 지원과제 결정
 - * 선정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,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3.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

-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
 - * 총 수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,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협약 체결되며, 당해 연도 과제 수행결과와 차기년도 사업계획 평가·심의·조정 절차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

○ 사업 수행기간

- 최종 기술개발 완료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운영기간을 포함

구 분	사업기간
총 수행기간	2015. 12. 1 ~ 2016. 11. 30

- * 협약 일정에 따라 협약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

4. 사업비 관리

- 수행기관은 사업비(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)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
 - * 직접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, 전담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
 - *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
- 인건비 산정
 - 직접비 산정 시 기업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가능
 - *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3]의 해당 소분류를 선택하여 신청하나,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
- 기술료 징수
 - 영리기관에 한해 기술료 납부
 - * 기술료 납부 금액은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

5. 지원제외 검토 및 과제선정 취소

-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 - 단,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(단, 비영리기관은 비적용)
 - 기업의 부도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법정관리·화의·파산·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 -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 이때,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
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 - *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,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
 - * 선정평가이후상기 제외항목을확인한 경우, 해당과제의선정을 취소하거나협약을해약할 수있음
-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

-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 -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 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-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
6. 기 타

- 수행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,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과제결과 활용실적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
-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단계별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사업 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자문단을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구성·운영해야 함
- 기업 규모 구분
 - 중소·중견·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
 - 1)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
 - 2) '중견기업'이란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
 - 3) '대기업'이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

[별표 1]

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
1. 출연금 등 지원 기준(제27조제1항 관련)

주관기관 단독 수행			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		
중소기업 인 경우	중견기업 인 경우	대기업 인 경우	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	참여기업이 2개인 경우	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
연도별 사업비의 75% 이내	연도별 사업비의 60% 이내	연도별 사업비 의 50% 이내	가. 중소기업 : 연도 별 사업비의 75% 이내 나. 중견기업 : 연도 별 사업비의 60% 이내 다. 대기업 : 연도별 사업비의 50% 이내	가. 모두 중소기업 : 연 도별 사업비의 75% 이내 나. 모두 중견기업 : 연 도별 사업비의 60% 이내 다. 중소기업과 중견기 업 1개씩 : 연도별 사업비의 60% 이 내 라. 그 밖의 경우 : 연 도별 사업비의 50% 이내	가.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2 이상 : 연도별 사업비의 75% 이내 나. 중견기업 비율이 3분의2 이상 : 연도별 사업비의 60% 이내 다. 그 밖의 경우 : 연도별 사업비의 50% 이내

2.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(제28조제2항 관련)

주관기관 단독 수행			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동수행		
중소기업 경우	중견기업 경우	대기업 경우	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	참여기업이 2개인 경우	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
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0% 이상	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3% 이상	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5% 이상	가. 중소기업 : 연도 별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 나. 중견기업 : 연도 별 민간부담금의 13% 이상 다. 대기업 :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% 이상	가. 모두 중소기업 : 연 도별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 나. 모두 중견기업 : 연 도별 민간부담금의 13% 이상 다.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1개씩 : 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3% 이상 라. 그 밖의 경우 : 연 도별 민간부담금의 15% 이상	가.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2 이상 : 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0% 이상 나. 중견기업 비율이 3 분의2 이상 : 연 도별 민간부담금 의 13% 이상 다. 그 밖의 경우 : 연도별 민간부담 금의 15% 이상